

#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1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5일, 운영희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11월 28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확충할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예산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 1) 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에 필요한 제반 시설 등을 확충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맨발걷기 활성화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보행로 조성, 시설 설치 등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 예산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내 숲길, 등산로, 도시공원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주민들의 외부활동 증가와 힐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맨발걷기 활동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음.
- 본 제정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으로 우리 구에 위치한 도시공원 등을 활용한 맨발산책로 조성과 맨발걷기 문화 확산으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